

대전광역시 대덕구

구 공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공	보
http://www.daedeok.go.kr	

선	기관(부서)의 장
람	

제2020-113호
2020. 12. 18.(금)

차 례

고 시 (4)

- 2021년도 건축물 및 기타물건 시가표준액 결정·고시(고시 제2020-140호) 1
- 자율주택정비사업 준공인가 고시(고시 제2020-141호) 3
- 도로명주소 부여 고시(고시 제2020-142호) 4
- 도로명주소 부여 고시(고시 제2020-143호) 5

공 고 (6)

- 공시송달 공고(공고 제2020-1219호) 6
- 대덕구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공고(공고 제2020-1222호) 7
- 사업자등록 폐업에 따른 처분사전통지서 공시송달 공고(공고 제2020-1223호) ... 8
- 개인정보 제3자 제공사항 공고(공고 제2020-1230호) 9
- 대덕구 옥외광고업 종사자교육 위탁계획 공고(공고 제2020-1231호) 10
- 건축물대장 직권말소 공시송달 공고(공고 제2020-1233호) 12

공									
람									

2021년도 건축물 및 기타물건 시가표준액 결정·고시

「지방세법」 제4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제1항, 제3항, 제7항의 규정에 따라 2021년도 건축물 및 기타물건에 대한 시가표준액을 다음과 같이 결정·고시합니다.

2020년 12월 18일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

I. 건 명 : 2021년도 건축물 시가표준액 결정

1. 결정항목

가. 건물 기준가격 : 소득세법 제99조제1항제1호나목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고시하는 건물 신축가격기준액

나. 건축물 시가표준액

- ① 건축물시가표준액 산출체계(산출체계도, 산출요령)
- ② 적용지수(구조지수·용도지수·위치지수의 적용)
- ③ 경과연수별 잔가율
- ④ 가감산특례(가산대상 및 가산율, 감산대상 및 감산율)
- ⑤ 증·개축 건축물 등에 대한 시가표준액 산출요령
- ⑥ 시가표준액이 시가보다 높은 건축물의 시가반영 차등 감산특례
- ⑦ 구분지상권에 대한 시가표준액 산출요령
- ⑧ 건축물시가표준액 일람표

2. 세부결정사항 : 2021년도 건축물 시가표준액표와 같음

※ 2021년도 건축물 시가표준액표는 세무과에 비치

Ⅱ. 건 명 : 2021년도 기타물건 시가표준액 결정

1. 결정항목

가. 차 량 : 80,175종

①정의 ②용어해설 ③적용요령 ④산출예시 ⑤기준가격표

나. 기계장비 : 12,874종

①정의 ②용어해설 ③종류 ④기계장비 연도별 잔가율표 ⑤적용요령
⑥산출예시 ⑦기준가격표

다. 선 박 : 140종

①정의 ②내용연수 및 감가율 ③적용요령 ④기준가격 ⑤잔가율표
⑥산출예시

라. 항 공 기 : 244종

①정의 ②내용연수 및 잔가율 ③적용요령 ④기준가격 ⑤산출예시

마. 시 설 물(부수시설물 포함) : 4,204종

①정의 ②종류(구분) ③내용연수 및 감가율 ④기준가격표
⑤시가표준액 산출방법

바. 입 목 :

①정의 ②용어해설 ③종류 ④시가 조사방법 ⑤시가표준액 산출방법
⑥시가표준액 적용요령

사. 어 업 권

①정의 ②종류 ③적용요령

아. 광 업 권

①정의 ②광업권의 대상 ③용어해설 ④적용요령

자. 회 원 권

①정의 ②종류 ③시가표준액 ④적용요령

차. 지하자원

①용어정의 ②지하자원(광물)의 종류 ③관련 용어해설 ④적용요령

2. 세부결정사항 : 2021년도 기타물건 시가표준액표와 같음

※ 2021년도 기타물건 시가표준액표는 세무과에 비치. 끝.

자율주택정비사업 준공인가 고시

자율주택정비사업 주민합의체로부터 준공인가 신청이 있어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의 규정에 따라 준공을 인가하고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0년 12월 18일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

1. 사업의 종류 및 명칭

가. (종 류) 자율주택정비사업

나. (명 칭) 목상동 193-1번지 일원 자율주택정비사업

2. 사업시행구역의 위치 및 면적

가. (위 치) 대전광역시 대덕구 목상동 879, 880, 881번지(지적확정측량 반영)

나. (면 적) 626㎡

3.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가. (성 명) 목상동 193-1번지 일원 자율주택정비사업 주민합의체 대표자 성두영

나. (주 소) 충남 공주시 신금2길 17

4. (준공인가 연월일) 2020. 12. 18.

5. (준공인가 내역)

구 분	용 도	구 조	대지면적	건축면적 (건폐율)	연면적 (용적률)	비 고
목상동 193-1 (後 목상동 879)	공동주택 (다세대주택)	철근콘크리트구조	306㎡	175.08㎡ (57.21%)	499.76㎡ (163.32%)	지상 1~5 층 (7세대)
목상동 194-1 (後 목상동 880)	공동주택 (다세대주택)	철근콘크리트구조	296.4㎡	177.2㎡ (59.78%)	621.92㎡ (209.82%)	지상 1~5 층 (12세대)

끝.

도로명주소 부여 고시

「도로명주소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건물 등에 부여한 도로명주소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0년 12월 18일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

○ 도로명주소 부여

지번주소	도로명주소	부여 고시일	도로명주소 부여 사유	도로명 부여사유 (도로명 고시일)
장동 353	산디로 3	2020. 12. 18.	공중화장실 도로명주소 부여	산디마을명에서 유래
법동 146-1	선비마을로 172	2020. 12. 18.	공중화장실 도로명주소 부여	예로부터 선비들이 살던 마을이라는 의미에서 유래
장동 산108-1	선비마을로 172-1	2020. 12. 18.	공중화장실 도로명주소 부여	예로부터 선비들이 살던 마을이라는 의미에서 유래
읍내동 산1-1	계족로762번길 190-1	2020. 12. 18.	공중화장실 도로명주소 부여	계족로의시작지점에서부터 약7,620m지점에서 오른쪽으로 분기되는 도로
연축동 산1-2	신탄진로162번길 195-16	2020. 12. 18.	공중화장실 도로명주소 부여	신탄진로의시작지점에서부터 약1,620m지점에서 오른쪽으로 분기되는 도로
신탄진동 산29-3	신탄진로756번안길 194	2020. 12. 18.	공중화장실 도로명주소 부여	신탄진로의시작지점에서부터 약7,560m지점에서 오른쪽으로 분기되는 도로의안쪽길
대화동 산32-23	한밭대로1009번길 81	2020. 12. 18.	공중화장실 도로명주소 부여	한밭대로의시작지점에서부터 약10,090m지점에서 왼쪽으로 분기되는 도로

※ 고시내용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대전광역시 대덕구청 지적과(☎042-608-5302)로 문의 또는 새주소 안내 홈페이지(<http://www.juso.go.kr>)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 도로명주소 사용 및 공부상 주소전환

- 도로명주소는 고시 후 도로명주소법 제19조제1항에 의거 공법관계에 있어서 주소로 사용되며, 2014년 1월 1일부터 도로명주소만을 사용해야 합니다.
- 공공기관에서 비치·관리하고 있는 각종 공부상 주소(소재지)는 해당기관에서 도로명주소로 변경합니다. 끝.

도로명주소 부여 고시

도로명주소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건물 등에 부여한 도로명주소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0년 12월 18일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

○ 도로명주소 부여

지 번 주소	도 로 명 주소	부여 고시일	도로명주소 부여 사유	도로명 부여사유 (도로명 고시일)
신대동 359-4	회덕로21번길 30-11	2020. 12. 18.	건물신축	회덕로의 시작 지점에서부터 약 210m 지점에서 왼쪽으로 분기되는 도로

※ 고시내용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대전광역시 대덕구청 지적과(☎042-608-5305)로 문의 또는 새주소 안내 홈페이지(<http://www.juso.go.kr>)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 도로명주소 사용 및 공부상 주소전환

- 도로명주소는 고시 후 도로명주소법 제19조제1항에 의거 공법관계에 있어서 주소로 사용되며, 2014년 1월 1일부터 도로명주소만을 사용해야 합니다.
- 공공기관에서 비치·관리하고 있는 각종 공부상 주소(소재지)는 해당기관에서 도로명주소로 변경합니다. 끝.

공 시 송 달 공 고

건축법 위반 건축물 건축주에게 「건축법」 제79조(위반 건축물 등에 대한 조치 등)에 의거 시정촉구하오나, 소유자의 확인이 불가능(신원미상)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2월 18일

대 전 광 역 시 대 덕 구 청 장

1. 제 목 : 위반건축물 시정촉구
2. 공고기간 : 2020. 12. 18. ~ 2021. 1. 15.(28일간)
3. 송달대상

소유자	위반건축물 소재지	위반내용	구조	위반면적 (㎡)	용도	비고
신원미상	신탄진동 119-14	무단증축	조립식판넬구조	30.1	창고	소유자불명

4. 송달내용

- 가. 신탄진동 119-14번지 위반건축물에 대하여, 「건축법」 제79조(위반 건축물 등에 대한 조치 등)에 의거 시정촉구하오나, 2021. 01. 15. 까지 시정(철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나. 상기 기한 내 미 시정 시 「건축법」 제79조(위반 건축물 등에 대한 조치 등) 규정에 의한 시정촉구 및 「행정대집행법」 제3조(대집행의 절차) 규정에 의한 행정대집행이 집행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다. 상기의 행정처분과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대덕구청 건축과(담당자 042-608-5143)로 연락주시기 바라며, 공시기간이 지나면 「지방세기본법」 제33조(공시송달)의 규정에 의하여 본 서류는 본인에게 도달된 것으로 간주됨을 알려드립니다. 끝.

대덕구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공고

1. 대덕구 관내 미집행된 도시계획시설 중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할 대상시설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5조에 따라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하고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 관계도서는 대덕구청 도시계획과(☎042-608-5102) 및 사업시행부서(건설과, 교통과)에 비치하여 일반에게 보입니다.

2020년 12월 18일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

가. 단계별 집행계획 총괄표

시설별	시행기간												비고	
	계			1단계(1~3년차)			2-1단계(4~5년차)			2-2단계(6년차 이후)				
	건수	면적(㎡)	사업비(백만원)	건수	면적(㎡)	사업비(백만원)	건수	면적(㎡)	사업비(백만원)	건수	면적(㎡)	사업비(백만원)		
합계	72	128,561	85,951	22	15,513	6,357	43	93,525	61,107	7	19,523	18,487		
소계	9	5,777	2,215	1	320	143	7	4,641	1,600	1	816	472		
재정적·집행시설	도로	5	4,205	1,779	1	320	143	3	3,069	1,164	1	816	472	
	주차장	4	1,572	436				4	1,572	436				
비재정적 집행시설	63	122,784	83,736	21	15,193	6,214	36	88,884	59,507	6	18,707	18,015		

※ 공고 이후 재정여건 및 주변개발여건 등에 따라 집행시기 등이 변경될 수 있으며, 사업비는 국토교통부 고시 기반시설별 조성비로 산정된 개략사업비로 실제 감정평가 및 조성현황 등에 따라 차이가 있을수 있음.

나. 단계별 집행계획 세부 조서 : 게재 생략. 끝.

사업자등록 폐업에 따른 처분사전통지서 공시송달 공고

「식품위생법」 제37조(영업허가 등)제7항의 규정에 의거 사업자등록 폐업(말소)에 따른 영업자의 「식품위생법」 위반사항에 대한 직권말소 예정사항을 공시송달(공고)합니다.

2020년 12월 18일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

1. 공고기간 : 2020. 12. 18. ~ 2021. 1. 1.(15일간)

2. 근거법규 : 「식품위생법」 제37조제4항, 제37조제7항

3. 행정처분(직권말소) 공고내용

가. 처분의 제목 : 「식품위생법」 위반업소 직권말소

나. 대상업소 : 대덕구 덕암북로96번길 81 (덕암동) / 불도장식당 (추○명)

다. 처분의 원인이 된 사실 : 관할세무서에 사업자등록 폐업 / 불도장식당(2009. 5. 12.)

4. 고지사항

가. 「행정절차법」 제21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2021년 1월 1일까지 의견 제출이 없을 경우 신고 사항에 대하여 공고 등의 절차 없이 직권말소 처리됨을 알려 드립니다.

5. 본 처분에 대한 문의 : 위생과 위생관리담당 ☎(042)608-6902. 끝.

개인정보 제3자 제공사항 공고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3조, 제4조 및 「개인정보 보호법」 제17조, 제18조에 따라 2021년 표준지공시지가 소유자 의견청취문 발송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였음을 공고합니다.

2020년 12월 18일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

1. 제공일자: 2020. 12. 17.
2. 제공받은 자 : (주)미래새한 감정평가법인 (주가람 감정평가법인)
3. 제공목적 : 2021년 표준지공시지가 소유자 의견청취문 발송
4. 법적근거 : 「개인정보 보호법」 제17조,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
5. 제공하는 개인정보 항목 : 표준지 소유자의 성명 및 주소
6. 제공받은 정보 보유기간 : 표준지 소유자의 의견청취 우편발송 완료시까지
7. 공고기간 : 2020. 12. 18. ~ 2021. 1. 12.
8. 공고방법 : 전국 시군구 홈페이지 및 게시판. 끝.

대덕구 옥외광고업 종사자교육 위탁계획 공고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0조, 「대전광역시 대덕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제26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대덕구 옥외광고업 종사자교육 위탁계획을 공고합니다.

2020년 12월 18일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

1. 교육위탁 기간: 2021. 1. 1. ~ 2023. 12. 31.(3년간)
2. 공고 기간: 2020. 12. 22. ~ 12. 28.(7일간)
3. 관계서류의 제출시기 및 장소: 2020. 12. 29.(18:00시까지 대덕구청 건축과)
4. 위탁받을 자의 임무: 대덕구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등에 대한 교육 및 전반업무
5. 자격 요건
 - 공고일 전일 현재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가 대전광역시에 소재하며 옥외광고사업 관련 교육을 실시할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단체(교육기관 또는 법인 포함)로 다음 각 호의 조건을 모두 갖춘 단체
 - 가. 150명 이상의 강의실 1실 이상 확보 가능한 단체(임대가능)

나. 옥외광고물 관련법령에 대하여 전문성을 가진 강사 2인 이상 확보 가능한 단체(국가 기술자격법에 의한 옥외광고, 건축, 전기, 디자인, 환경분야 등)

다. 기타 교육에 필요한 기자재 및 비품 등의 확보 가능한 단체

6. 선정방법: 자격요건 적정성 여부

7. 구비·제출서류

가. 옥외광고업 종사자 등 교육위탁지정신청서(별지 제14호 서식)

나. 자격 요건 구비에 대한 증빙서류

다. 교육계획서(교육의 종류별 실시시기·내용·시간 및 장소, 교육 대상자, 실시방법·절차 및 비용, 그 밖에 교육에 필요한 사항 등)

※ 신청서류는 우편도착 및 방문접수에 한하며 인터넷, 팩스접수가 불가함.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대덕구 건축과☎(042)608-518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끝.

건축물대장 직권말소 공시송달 공고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22조제3항에 따라 건축물대장을 직권말소 하였으나, 소유자의 주소 불명으로 말소내용을 통지할 수 없어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건축물대장 말소내용을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0년 12월 18일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

1. 공시송달 방법 : 공보 및 인터넷 홈페이지
2. 공 고 기 간 : 2020. 12. 18. ~ 2021. 01. 01.(14일간)
3. 공 고 장 소 : 대덕구청 공보 및 인터넷 홈페이지
4. 공시송달 내용

가. 처분의 제목	건축물대장 직권말소					
나. 처분의 원인된 사실	건축물대장 말소					
다. 처분하고자하는 내용 (건축물대장말소)	위치	소유자	층수	구조/지붕	용도	면적
	목상동 189-2	신대철	지상1층	목조/스레트	주택	72.73㎡
라. 법적 근거 및 조문내용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22조제3항					

5. 유의사항

위 사항에 의견이 있으신 분은 의견제출서 서식에 따라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대덕구청 건축과(☎042-608-515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끝.

의견제출서

※ 아래의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의견제출인	성명	
	주소	전화번호
의견제출 내용	① 예정된 처분의 제목	
	당사자	성명(명칭)
		주소 (전화번호:)
	의견	
기타		

「행정절차법」 제27조제1항(제31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의견제출인

(서명 또는 인)

대전광역시대덕구청장 귀하

유의사항

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3. 위 의견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①란에 함께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견제출시 유의사항 》

1. 귀하는 앞쪽의 사항에 대하여 구술·정보통신망 또는 별지 11호 서식에 의한 서면으로 의견 제출을 할 수 있으며, 주장을 입증할 증거자료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의견 제출기관으로 알려 주시고, 의견을 제출하신 후에는 의견의 도달 여부를 담당자에게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의견 제출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3. 귀하께서 행정청에 출석하여 의견진술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행정청에 미리 그 사실을 알려 주십시오.
4.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의견 제출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끝.

○ 담당부서 : 대전광역시 대덕구청 건축과

○ 연 락 처 : 042)608-5157, 모사전송(FAX) 042)608-3843